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단52792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한혜윤, 이선영, 최단비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한상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395,406원 및 그 중 163,341,852원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20. 2. 22.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필요한 보증을 위하여 보증원금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보증채무이행금액과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곧 갚되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을 갚기로 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D은행에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D은행은 2018. 12. 4.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12. 27.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미회수 대출원리금 163,560,3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의 위 대위변제 당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구상원리금은 총 167,395,406원(= 원금 163,341,852원 + 확정지연손해금 632원 + 법적절차비용 4,052,922원)이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8. 5. 9. 피고 C와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파주시 E 공장용지 2,995㎡와 지상 제1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494.4㎡ 및 제2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494.4㎡ 및 파주시 F 도로 947㎡가 있었는데, 위 적극재산 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파주시 G 등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감정평가명세표상 금액인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983,091,000원과 파주시 G 등 부동산 가액 1,506,849,830원을 합한 2,489,940,830원 정도이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소극재산으로는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017,308,220원, 주식회사 H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금 649,000,000원(위 채무는 2019. 3. 28.경 I 유한회사에게 양도되었다), J에 대한 원금 100,000,000원의 차용금채무,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채무 3,300만 원 등 약 2,799,308,2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67,395,406원 및 그 중 원금 163,341,852원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2. 22.까지는 약정 이율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18. 12. 27. 발생하여 비록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8. 5. 9.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이미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이미 앞서 본 것과 같이 합계 2,799,308,22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8. 9. 13. 2018. 9.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8. 11. 24. L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피고 회사의 신용불량 등록 사실을 통보한 점, 피고 회사가 2018. 11. 27.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이미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그 후 원고가 피고 회사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회사의 무자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8. 5. 9. 기준 피고 회사의 적극재산 가액이 2,489,940,830원 상당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2,799,308,220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음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 당시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해 피고 C은,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유통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유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유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유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올라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까지 피고 회사에게 총 3,300만 원(2017. 8. 22.자 대여금 1,300만 원 + 2017. 11. 7.자 대여금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추가로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자금난이 피고 C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하여 해소되었다거나, 피고 회사가 피고 C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회사의 사업 계속을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 C의 선의 항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17. 8. 22. 변제기한을 2017. 9. 5.까지로 정하여 1,300만 원을, 2017. 11. 7. 변제기한을 2017. 11. 22.까지로 정하여 2,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각 대여해 준 사실, 피고 회사가 위 각 변제기한으로부터 최대 8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까지 위 3,3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이 경로되어 있었고, 그 이외에 어떠한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도 마쳐져 있지 아니하여 제3자로서는 위 등기부등본의 기재만으로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를 알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의 보증기한을 2017. 4. 20.까지로 정하였다가 매년 1년씩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왔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직전인 2018. 4. 20. 피고 회사에게 위 보증기한을 2019. 4. 18.까지 다시 연장하는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용이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위와 같이 보증기한을 연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사업 자금을 대여해 주었고,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C과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관계를 알 수 없는 이상 피고 C이 원고와 달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 C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 회사에게 2회에 걸쳐 기존 대여금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7,000만 원을 추가 대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양지

<별지>

목 록

1. 경기도 파주시
답 3613㎡

파주등기소 2018년 5월 9일
접수 제34231호 을구순위 11번
근저당권설정 금 240,000,000원

2. 경기도 파주시
답 352㎡

파주등기소 2018년 5월 9일
접수 제34231호 을구순위 2번
근저당권설정 금 240,000,000원

3. 경기도 파주시
답 524㎡

파주등기소 2018년 5월 9일
접수 제34231호 을구순위 2번
근저당권설정 금 240,000,000원

